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4. 23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0년 4월 13일

○ 회부일자: 2020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후생복지조례에 대한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- 후생복지 조례 목적 및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

나.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범위 규정(안 제3조)

-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

다.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(안 제4조~제5조)

-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,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함

라.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(안 제6조~제7조)

-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함

- 마.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설치, 구성, 임기,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)
-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는 9명 이내, 2년의 임기로 하며,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소집함
- 바.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1조)
-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3조에서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도록 하되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사립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휴직·국외파견·징계·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에게는 후생복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또한,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 시설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‘충청북도교육청 후생복지 운영위원회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였던 각종 후생복지 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 조례안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